

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% 감면 추진

재무과 재산세팀

055-860-3462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'착한 임대인'에게 재산세 감면 추진

감면대상

-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1일)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, 임대료의 5%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

감면세목

-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(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포함)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%까지 감면
 - ※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은 감면 제외

적용일시

- 올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